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정착금을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 89~153백만원(1인은 89백만원, 2~3인은 128백만원, 4인 이상은 153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지급 금액 산정 시 가족 인원의 기준을 동거하는 세대원으로 명확히 하여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1. 6. ~ 1. 16.) 결과,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착금 지급 구분표(제16조제1항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정착금부터 적용한다.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금 액
애국지사		1억5천3백만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1.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5천3백만원
	2.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가. 세대주 외에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천9백만원
	나.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2천8백만원
	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1억5천3백만원

비고: ‘동거’의 기준은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780